

라자드 코리아 주식종류형 투자신탁 약관 변경 안내

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 제31조 제 3항 제 2호와 동 펀드 신탁약관 제 51조에 제 1항에 의거 다음과 같이 약관 변경을 공고합니다.

1. 투자신탁 명칭 : 라자드 코리아 주식종류형 투자신탁
2. 자산운용회사 : 라자드코리아자산운용(주)
3. 신탁약관 변경내용 : 클래스 C2 추가 신설에 따른 변경

변경사항	변경전	변경후
수익증권의 발행 및 예탁	제14조(수익증권의 발행 및 예탁) ① (생략) 1. 클래스 A 수익증권 2. 클래스 C 수익증권 3. 클래스 I 수익증권	제14조(수익증권의 발행 및 예탁) ① (종전과 동일) 1. 클래스 A 수익증권 2. 클래스 C 수익증권 3. 클래스 I 수익증권 4. 클래스 C2 수익증권
수익증권의 판매기준 및 판매가격	제20조(수익증권의 판매기준 및 판매가격) ① 1~3 (생략)	제20조(수익증권의 판매기준 및 판매가격) ① 1~3 (종전과 동일) 4. 클래스 C2 수익증권: 투자자의 자격을 납입금액이 10억 이상인 경우에 한하며 선취판매수수료를 징구하지 않는 종류형 수익증권
환매수수료	제23조(환매수수료) ② (생략) 1. 클래스 A 수익증권, 클래스 C 수익증권, 클래스 I 수익증권 가. 90일 미만 : 이익금의 70%	제23조(환매수수료) ② (종전과 동일) 1. 클래스 A 수익증권, 클래스 C 수익증권, 클래스 I 수익증권 및 클래스 C2 수익증권 가. 90일 미만 : 이익금의 70%
투자신탁보수	제40조(투자신탁보수) ③ 1~3 (생략)	제40조(투자신탁보수) ③ 1~3 (종전과 동일) 4. 클래스 C2 수익증권 가. 자산운용회사보수율 : 연 1000분의 7.00 나. 판매회사보수율 : 연 1000분의 5.00 다. 수탁회사보수율 : 연 1000분의 0.35 라. 일반사무관리회사보수율 : 연 1000분의 0.25

4. 시 행 일 : 2008년 10월 22일

※ 보다 자세한 내용을 확인하시고자 하는 고객께서는 판매회사 영업점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.

라자드코리아자산운용(주)